-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73호

2021. 03. 16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3. 2. 정순희·오진환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1. 3. 4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1. 3. 16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오진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구민 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
○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 ~ 제4조)

○ 지원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지원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7조)

○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,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(안 제8조 ~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○ 제정안의 개요

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구민 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제정안의 제출 배경

- 각종 재난 발생 시,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,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·돌봄·안전·운송·환경미화 등은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해당 노동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보호·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○ 종합의견

본 제정안은 상위법을 따르고 있고, 재난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